

상공회의소 법령 안내

1

상공회의소는?

상공회의소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로 상공회의소법에 의거,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
포항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(포항시·영덕군·울진군·울릉군)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,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높이며, 당면한 경제적 현안을 해결하는 등 지역 상공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.

2

상공회의소법 주요내용

제10조(회원)

- ① 상공업(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)을 영위하는 자(이하 "상공업자"라 한다)는 그 영업소,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-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[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에 따라 영세율(零稅率)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]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.

※ 시행령 제11조(당연회원의 기준)

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**당연회원**이 되는 **매출세액의 기준**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: 17억원
2.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: 5억원
3. 특별자치도·시·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)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: 2억 5천만원

제13조(회원 등의 권리)

- 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
제14조(회원 등의 의무)

-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.

3

회원자격 및 회원회비

회원자격

포항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로서 반년 매출액이 25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법적으로 상공회의소 회원이 됩니다.

회원회비

- 매출세액(과세·영세·면세금액 합산 매출액 × 10%) × 2.2/1,000(정부인가 회비부과율)
- 회비산출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누진체감공제 적용
- 회비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10% 공제
- 상공회의소 회비는 **손비 및 필요경비로 100% 인정**(손금산입,세금감면 혜택)
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1호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)
- 입금계좌 : 우리은행 509-041263-13-039 (포항상공회의소)

4

회원대장

제17조(회원대장)

-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(臺帳)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과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원과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. 다만, 회원과 준회원의 특허·기술이나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